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31일, 이수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 3. 11.)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 4.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2026. 4. 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의원)

화장품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

화장품 업계에서도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산업 특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강화 대응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규제 인증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화장품 영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육성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형 화장품 기업 인증 제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사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제정안은 ‘화장품산업’을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을 연구개발, 제조·생산, 유통, 판매·수출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
으로 정의하면서, ‘화장품의 제조·판매에 사용되는 용기 또는 원료를
제조·공급하는 기업’과 ‘화장품 제품 유통 또는 소매 판매를 주된 사
업으로 하는 기업’ 등을 이 법에 따른 ‘화장품기업’의 범주에 포함함
으로써 소재·원료와 용기·포장재 등 부자재 및 생산·판매 등으로 이
어지는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내에서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화장품기업 중
연구개발(R&D)·수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
준에 해당하는 화장품기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화장품기업’
으로 인증하여 각종 특례나 우대조치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의 수출 호조세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화장품산
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
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2026년도 예산액 4억 6,300만원)이
나 ‘K-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및 수출 다변화 지원(2026년도 예산
액 245억 2,300만원)’ 등의 다양한 내역사업이 편성된 점 등을 고려

할 때 제정 실익 측면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화장품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포함한 화장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제정 목적 및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중앙행정기관 간에 정책 및 업무분장의 명확한 조정이 요구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정의한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목) 외에 ‘수출 기준’(나목)을 그 요건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라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제공되는 조세 감면이나 부담금 면제 특례 등의 우대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에 해당하게 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